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9.

행정재무위원회
전문위원 장영교

1. 제안요지

- 가. 의안번호: 제1854호
- 나. 제출자: 성동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. 11. 11.
- 라. 회부일자: 2022. 11. 18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,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나, 조례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에 대해 수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수탁자의 의무 중 전대 불가 규정 삭제 (안 제15조)
- 나. 인용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, 별첨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가. 제안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,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나, 조례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에 대해 수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

1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~③ 생략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2)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제23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생략

-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5조(수탁자의 의무)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중 전대 불가 규정을 삭제하였고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(생략)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<u>양도(讓渡) 또는 전대(轉貸) 할 수 없다.</u> ③·④ (생략)	제15조(수탁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 <u>양도(讓渡) 할 수 없다.</u>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- 안 제19조(센터의 이용)에서는 이용료 면제 대상자 근거 법령을 현행화 하였음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센터의 이용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대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19조(센터의 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 관련 조례 정비 대상 통보(2022. 7. 4.)」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됨